



# 보도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1. 9.(월) 조간 2023. 1. 8.(일) 12:00	배포 일시	2023.1.6.(금)		
담당 부서	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	책임자	과장	한영규	(044-202-3320)
		담당자	사무관	방우식	(044-202-3321)

##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,180원 지급 - (2022년) 38만 7,500원 → (2023년) 40만 3,180원으로 인상 -

-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0만 3,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.
-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「장애인연금법」 제6조에 따라 '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.1%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(30만 7,500원) 대비 1만 5,680원 인상된 32만 3,180원으로 결정하였다.
- 이에 따라, 1월 급여지급일(1월 20일)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\* 32만 3,180원과 부가급여\*\*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,180원을 매월 지급한다.
  - \* (기초급여)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
  - \*\* (부가급여)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(재가) 기준 8만 원을 지급한다.
-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.5%를 고려하여 '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, 부부가구 195만 2,000원으로 결정하였다.
- 「장애인연금법」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%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,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

-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로써,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.
- 아울러,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, 복지포 누리집 (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)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.
-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신청\*도 가능하다.
  - \*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, 부모, 자녀, 자녀의 배우자, 형제 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.
-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 (국번 없이 129)에서 상담할 수 있다.
-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“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,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.” 라고 밝혔다.

<붙임> 장애인연금 개요

## 붙임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

### □ 사업목적

-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,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

### □ 대상자 (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% 이하)

- (중증장애인) 「장애인연금법」상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
  - \* 종전 장애등급 상 1급·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
- (선정기준) 선정기준액('23년 단독 122만 원, 부부 195만2000원) 이하
  - \*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%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

### □ 장애인연금 급여 (기초급여 + 부가급여)

- (기초급여)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
- (부가급여)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

(’23년 기준)

구 분	18~64세			65세 이상		
	기초급여*	부가급여	합계	기초급여	부가급여	합계
생계·의료급여수급자(재가)	323,180원	80,000원	403,180원	기초연금 으로 전환	403,180원**	403,180원
생계·의료급여수급자(시설)	323,180원	-	323,180원		-	-
교육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	323,180원	70,000원	393,180원		70,000원	70,000원
차상위 초과	323,180원	20,000원	343,180원		40,000원	40,000원

- \*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(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,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% 감액)
- \*\*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

### □ 2023년 예산: 1조 3,097억 원 (국비 67%+지방비 33%)

\* 국비 기준: ('21) 8,291억 원 → ('22) 8,326억 원 → ('23) 8,787억 원

### □ 수급자 현황 : 36만 3,021명 (수급률 70.5%, '22.11월 기준)

